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0. 2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현행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방법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 (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)이 불합리함에 따라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일시납부와 분할납부방법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일시납부시 대금의 1할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, 잔액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완납하도록 함.
- 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분할납부시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이내에 균등하게 분할납부하도록 함.
- 이자율이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율을 적용하고,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함.

□ 근거법령 : 지방재정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3624호) 제100조

□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예산상황 : 해당사항 없음
- 관계법령발췌서 : 덧붙임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(재산매각대금의 납부등)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, 잔액에 대하여는 계약 일로부터 60일이내에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계약체결 당시 결정 고시한 시중은행의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때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으로 대금의 1할과, 1회 분납금으로 대금의 2할이상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이자율이 영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의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을 적용하고,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